

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
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4호

보건복지부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1월 3일
보건복지부장관

1. 채용 개요

□ 채용분야

채용분야	채용예정인원	근무지	담당업무
홍보전문가 (공무직)	1명	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온·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기획·운영디지털 소통 기획디지털 매체 광고 플래닝 및 집행디지털소통 대외 협력(페이스북, 구글 등)기타 소속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

♣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최초 상기의 조건으로 선발하되, 회사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

□ 응시자격

구분	응시자격
홍보전문가 (공무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관련 학과(PR, 광고, 마케팅 등) 대학 졸업 후 유관 업무로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-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은 채용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- 유관업무가 확인될 수 있는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개인 사업자 등 제출 필요*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(선택사항)

2. 근무 조건

- 신분 : 공무직 (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)
- 근무기관 : 보건복지부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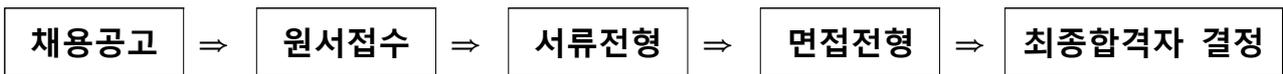
○ 근무(계약)기간 : 2024. 2. ~ 정년

※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연번	구분	내용
1	근무형태	○ 전일제 근무 ○ 근무요일 : 월 ~ 금요일
2	근무시간	○ 적용기준 : 1일 8시간, 1주 40시간 ○ 근무시간 : 09:00부터 18:00까지 ○ 휴게시간 : 12:00부터 13:00까지(점심시간)
3	임금수준	○ 기본급 : 월 2,500~3,500천원 상당(세전기준, 4대보험 본인부담액 포함) * 최종합격자의 경력기간 반영하여 확정함 ○ 정액급식비, 복지포인트, 명절상여금은 계약에 따라 별도 지급 ○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○ 4대보험 가입(개인별 가입연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
- ♣ 근로조건 및 보수액은 채용계약 시 최종 확정함
- ♣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, 근무요일은 회사 운영여건 및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
- ♣ 임금수준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, 예산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♣ 기타 복지후생 등의 사항은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3. 전형단계 및 일정



구분	일정	비고
i) 채용공고	'24. 1. 3.~'24. 1.12.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게시
ii) 응시원서접수	공고기간과 같음	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
iii) 서류합격자 발표	'24. 1. 19.	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iv) 면접시험	'24. 1. 25.	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
v)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	'24. 1월 말	
vi) 최종합격자 발표	'24. 1월 말	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vii) 신원조회 및 자격사실검증 등	'24. 2월 초	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
viii) 최종 임용 예정일	'24. 2월 중	보건복지부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

- ♣ 상기일정은 보건복지부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4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 방법

- 원서접수 기간 : '24. 1. 3.(수) ~ '24. 1.12.(금)
- 접수처 :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
- 접수 방법 : 접수처에 ①우편(등기) 접수, ②직접 제출 또는 ③이메일 접수
- ※ 주소 : 우)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
- ※ 우편접수시 겹봉에 「보건복지부 홍보전문가 지원서 재중」 반드시 명기
- ※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, 우편·이메일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
- ※ 이메일의 경우, sk1225@korea.kr로 송부 후, ☎044-202-2034로 확인필요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홍보전문가	<p>< 1차 : 서류전형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원서 (붙임1)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4호서식) ○ 입사지원서 (붙임2)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5호서식) ○ 자기소개서 (붙임3)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6호서식) ○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(붙임4)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14~16호서식) <p>< 2차 : 면접전형 > ※ 면접 시 반드시 지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적증명서 1부 ○ 담당업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각 1부 ○ 기타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○ 주민등록초본 1부 (출신지 미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○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 (가점 항목당 해당자에 한함)

5. 가점사항 및 결격사항 (보안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채채용 기준 제23조, 제26조)

□ 가점 사항 (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 기준)

○ 아래 가점 사항이 있을 경우 입사지원서(붙임2)에 체크하여 제출

항목	내 용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~10% * 가장 유리한 1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함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* 최대 1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가점 적용함

※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

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 단,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.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합산할 수 있고, 가점의 총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를 초과할 수 없음 (법정가점에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
※ 다만, 서류전형 적부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최종 합격예정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자가 없을 수 있음

□ 결격 사유 없을 것

-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공정채용기준 제26조)

<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>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6. 채용방법

□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*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
- * 서류전형기준 : 직무연관성, 자기소개서의 우수성, 경력·업무실적의 우수성 등
-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, 법정 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

□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-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가적 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감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- 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

□ 최종합격자 발표

-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-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7. 유의 및 안내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이를 반환하고, 위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다만, 채용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 (전화, 전자우편주소 등)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, 채용 관련 문서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존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,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, 기타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」 제29조에 따릅니다.
-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, 합격 취소, 중도 퇴사, 채용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채용을 위해 '자격요건'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합격예정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4호서식]
2. 입사지원서 1부 [별지 제5호서식]
3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6호서식]
4.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1부 [별지 제14~16호서식] 끝.

[별지 제6호서식] 자기소개서

자기소개서

성 명	
연락처	핸드폰)
	비상연락처)
e-mail	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나이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작성요령 예시) 지원동기,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, 생활신조와 가치관, 직무수행 계획 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

(분량: A4용지 2매 이내, 글씨체: 휴먼명조, 글자크기: 13포인트, 자간: 160%)

0 지원동기 (필수)

0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

0 생활신조와 가치관

0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직무수행 계획 (필수)

[응시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

보건복지부는 공무원근로자 등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필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응시번호, 성명, 응시직급, 주소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전화번호, 자격증 정보(자격증명, 취득일, 자격검정기관), 병역사항(군필여부), 경력정보, 전자메일, 학력정보 등	○본인확인 ○신규채용 심사 ○임용시 경력산정 등 보수수준 심사 ○인사·노무관리 ○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· 미채용자 : 180일 · 채용자 : 퇴직후 3년까지 *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지침에 따라 채용시험과 관련된 경우 10년, 임용과 관련된 경우 30년

※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장애인등록증, 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수급자증명서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정보	○본인확인 ○신규채용 심사 ○기타 인사·노무관리	· 미채용자 : 180일 · 채용자 : 퇴직후 3년까지 *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지침에 따라 채용시험과 관련된 경우 10년, 임용과 관련된 경우 30년

※ 응시자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□ [필수] 복수국적자, 경력,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응시요건, 증빙자료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를 발급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 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·공개·활용합니다.

제공 항목	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	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	근로자 채용 및 관리	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
자격증, 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	관련 개인정보 보유기관	근로자 채용 및 관리	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

※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사본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동의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보건복지부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원 근로자 등 채용심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 : 결격사유 유무 정보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 년 월 일

동의자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